

**편집자 주** - 위원회는 ADR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ADR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일본 ADR 촉진법'을 게재한다.

## 일본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2004년(平成 16년) 12월 1일 법률 제151호)

개정 2006년(平成 18년) 6월 2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내외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분쟁의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3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분쟁의 실정에 맞는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제도를 두고, 더불어 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그 편의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그 해결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절차를 용이하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이익의 적절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아래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민간분쟁해결절차 : 민간사업자가, 분쟁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당 분쟁당사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터 잡아 화해의 중개를 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업무로서 처리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절차실시자 :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화해의 중개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분쟁해결절차 : 제5조의 인증을 받은 업무로서 취급하는 민간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4. 인증분쟁해결사업자 : 제5조의 인증을 받아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등)** 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는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분쟁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실시되고 또한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분쟁의 실정에 맞는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취급하는 자는 전항의 기본이념에 따라 서로 제휴를 도모하면서 협력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내외의 동향, 그 이용 상황,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보급이 주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면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

### 제1절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인증

**제5조(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인증)**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업무로서 취급하는 자(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인증의 기준)** 법무대신은 전조의 인증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취급할 해당 신청에 관련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며, 또한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 그리고 경리적 기초를 가졌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1. 그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하여 화해의 중개를 하는 분쟁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것

2. 전호의 분쟁의 범위에 대응하여 개개의 민간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화해의 중개를 하는 데 적합한 자를 절차실시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

3. 절차실시자의 선임방법 및 절차실시자가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그 밖의 민간분쟁해결절차의 공정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절차실시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4. 신청자의 실질적 지배자 등(신청자의 주식의 소유, 신청자에 대한 용자, 그 밖의 사유를 통하여 신청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신청자의 자회사 등(신청자가 주식의 소유 그 밖의 사유를 통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을 분쟁당사자로 하는 분쟁에 관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실질적 지배자 등 또는 신청자가 절차실시자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5. 절차실시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분쟁에 관한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실시자가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법서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을 것

6.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할 때에 하는 통지에 관

하여 상당한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7. 민간분쟁해결절차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표준적인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것

8. 분쟁당사자가 신청자에 대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의 요건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

9. 신청자가 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전호의 의뢰를 받았을 경우, 분쟁의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분쟁의 타방당사자가 이에 응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을 것

10.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의 보관, 반환 그 밖의 취급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11.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진술되는 의견 또는 제출되거나 제시되는 자료에 포함된 분쟁당사자 또는 제3자의 비밀에 관하여 해당 비밀의 성질에 따라 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취급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제16조가 규정하는 절차실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러한 비밀에 대하여도 같다.

12. 분쟁당사자가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요건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

13. 절차실시자가 민간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종료하고 그 취지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을 것

14. 신청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및 절차실시자에 관하여 이들이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을 것

15. 신청자(절차실시자를 포함한다)가 지급받는 보수 또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산정방법, 지급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을 것

16. 신청자가 취급하는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대한 불만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것

**제7조(결격사유)**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1.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2.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지 않는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이 법률 또는 변호사법(소화 24년 법률 제20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집행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인증분쟁해결사업자로서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9호, 제8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3항도 같다)인 자가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 전 60일 이내에 그 임원(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제9호도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8.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가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이 호에서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고 한다)

9.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전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10. 개인으로서 그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제1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1. 폭력단원 등을 그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해당 업무의 보조자로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자

12.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8조(인증의 신청)** ① 제5조의 인증의 신청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2.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전 2호가 정하는 것 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그 밖의 기본약관을 기재한 서류

2. 그 신청에 관련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을 기재한 서류

3. 그 신청에 관련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한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

4. 신청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그 밖의 해당 신청에 관련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리적 기초를 가졌음을 밝히는 서류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5. 전 각호 이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5조의 인증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에 관한 의견청취)** ① 법무대신은 제5조의 인증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자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때는 이러한 법인을 소관하는 대신과, 신청자가 설립에 관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일 때는 그 허가 또

는 인가를 한 대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와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대신은 제5조의 인증을 하려고 할 때는 제7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해당 사유(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8호에 관련된 사유에 한한다)의 유무에 대하여 경찰청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무대신은 제1항이 규정하는 처분 또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증심사참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참여원)** ① 법무성에, 제5조의 인증의 신청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조 제1항의 변경의 인증 신청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그리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및 해당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무대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참여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인증심사참여원은 행정불복심사법(소화 37년 법률 제160호)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인 또는 참가인의 의견진술에 관련된 절차에 입회하고, 또한 이러한 자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인증심사참여원은 민간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④ 인증심사참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참여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인증의 공시 등)** ① 법무대신은 제5조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사업자라는 취지 및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에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 인증분쟁해결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쓰거나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인증분쟁해결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변경의 인증)** ①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또는 그 실시방법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법무대신의 변경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변경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신청서에는 변경 후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을 기재한 서류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6조, 제8조 제3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의 인증에 관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의 인증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및 해당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13조(변경의 신고)** ①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아래의 변경이 있을 때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2.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또는 그 실시방법에 관한 전조 제1항 단서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3. 법인의 경우는 정관, 그 밖의 기본약관(전2호의 변경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변경
4. 전3호 이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무대신은 전항 제1호의 변경에 관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절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업무**

**제14조(설명 의무)**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계약의 체결에 앞서,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또는 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의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제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절차실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분쟁당사자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7호가 규정하는 인증분쟁해결절차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표준적인 절차의 진행
4. 전3호 이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폭력단원 등의 사용의 금지)**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폭력단원 등을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업무의 보조자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절차실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한 인증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실시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와의 사이에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월일
2. 분쟁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절차실시자의 성명
4. 인증분쟁해결절차 실시의 경위
5. 인증분쟁해결절차의 결과(인증분쟁해결절차의 종료 이유 및 그 연월일을 포함한다)
6. 전 각 호 이외에, 실시한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합병의 신고 등)** ①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그 취지를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소멸하게 되는 합병(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상당하는 행위. 제3항에서도 같다)

2.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3. 해당 인증분쟁해결사업자를 분할하는 법인으로 하는 분할로서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한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키는 것

4.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의 폐지

② 법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있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는, 그 행위를 한 날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었던 때에는 해당 행위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취지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해산의 신고 등)** ①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파산 및 합병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해산(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에 상당하는 행위. 이하 같다) 하였을 경우, 그 청산인(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

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다음 항에서도 같다)은 해당 해산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은 해당 해산의 날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해산을 한 취지 및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인증의 실효)**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5조의 인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

2.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전조 제1항의 해산을 하였을 때

3.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3절 보고 등

**제20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법무대신은 인증분쟁해

결사업자에 관하여 제23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증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실시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해당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해당 업무의 실시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권고 등)** ① 법무대신은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관하여 다음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인증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대신은 전항의 권고를 받은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대하여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의 취소)** ① 법무대신은 인증분쟁해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5조의 인증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의 인증을 받았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② 법무대신은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그 취급하는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이 제6조 각 호가 정하는 기준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2.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또는 경리적 기초를 갖지 않게 되었을 때

3.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③ 법무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7조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8호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경찰청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처분일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었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취소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조(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특성에 대한 배려)** 법무대신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하거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민간분쟁해결절차가 분쟁당사자와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실시하는 자와의 사이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또한 분쟁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노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그 밖의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특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3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5조(시효의 중단)** ①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절차실시자가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종료하였을 경우,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해당 분쟁당사자가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의 청구시에 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또한 해당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날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던 분쟁이 있었던 경우,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해당 분쟁당사자가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9조 각 호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 중 빠른 날(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사망에 의하여 제5조의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도 전항과 같다.

③ 제5조의 인증이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고 또한 그 취소처분일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었던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해당 분쟁당사자가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을 안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도 제1항 같다.

**제26조(소송절차의 중지)** 분쟁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해당 분쟁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해당 분쟁당사자의 공동의 신청이 있을 때는, 수소재판소는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해당 분쟁당사자 사이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을 것

2. 전호가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분쟁당사자 사이에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당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을 것

② 수소재판소는 언제라도 전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7조(조정외 전치에 관한 특칙)** 민사조정법(소화 26년 법률 제222호) 제24조의2 제1항의 사건 또는 가사심판법(소화 22년 법률 제152호) 제18조 제1항의사건(같은 법 제23조의 사건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소의 제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고, 또한 해당 의뢰에 근거하여 실시된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24조의2 또는 가사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소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제4장 잡 칙

**제28조(보수)**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의 절차실시자를 포함한다)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협력의뢰)** 법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청, 공공단체 그 외의 자에게 조회하거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법무대신에 대한 의견)** 경찰청장관은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관하여 제7조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8호에 관련된 사유에 한한다)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대신이 해당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31조(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표)** 법무대신은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널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해당 업무의 내용 및 그 실시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인터넷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 제5장 별 칙

**제32조**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5조의 인증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의 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폭력단원 등을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해당 업무의 보조자로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신청서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서류 또는 제12조 제2항의 신청서나 같은 조 제3항의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3조** ①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게시를 한 자

2.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차실시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의 절차실시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절차실시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

4.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나 수지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러한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

6.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 인증분쟁해결사업자(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

과하였을 때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종합법률지원법의 일부개정)** 종합법률지원법(평성 16년 법률 제7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판외의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6년 법률 제151호) 제1조가 규정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제32조 제3항도 같다}’로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제32조 제3항 중 ‘재판외의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로 개정한다.

**제4조(법무성설치법의 일부개정)** 법무성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9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5호의 다음에 아래 1호를 추가한다.

25의2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6년 법률 제151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의 인증에 관한 것

